



월
간

두 엄 누 리 회 보

www.duemnuri.com

제9호 2004년 1월29일

발행인 김 상 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1동 1440-1국제B/D301호
사단법인 한국부산물비료협회
전화:02/522-4260~1 FAX:02/522-4383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갑신년의 새해가 밝았다. 연말 년시가 지나가고 민속명절인 설 연휴도 끝이났다 이제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다소 들떠있던 기분에서 벗어나 각자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며 차분히 새로운 계획과 각오로 한해를 시작할 때이다. 새로이 시작되는 을 갑신년은 다른 해에 비하여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해이기도하다. 특히 우리가 몸담고 있는 농업분야는 칠레자유무역 협상에 의해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그 뿐이 아니다. 농업에 있어 세계적인 추세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환경문제와 보다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강한 욕구에 의해 친환경 유기농업으로 방향을 바뀌어가고 있다. 이제 농업의 경쟁력은 다수확 대량생산보다는 친환경농업에 의한 고품질 유기농산물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된다.

친환경 농업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퇴비를 생산하는 우리는 이러한 농업 환경 속

에 어떠한 위치에 처해있는가? 간단하게 말하면 농업에 필요한 농지라 할지라도 농업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도 같이 생각하는 농업이 되어야한다는 뜻이다. 농산물 전면 개방 앞에선 21세기의 농업은 오로지 식량생산만을 위한 농경사회중심의 농업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다. 그리고 화학비료의 출현이 농업을 발전시켰듯이 농업은 농사짓는 농민만이 발전시켜 나갈 수는 없는 것이다. 앞으로 발전해 나아갈 친환경 유기농업에 있어 부산물비료를 생산하는 우리의 역할은 어떠한 것일까?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환경문제와 농업부문 모두에 상당히 중요한 중심점에 들어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토양과 수질오염의 주요원인인 질소와 인등 유기성폐기물의 처리가 결국 우리들의 손에 달려있고 흙살리기와 친환경농업에 주요 과제인 토양유기물 투입에 관한 모든 것이 우리들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환경 분야에서도 비료 분야에서도 결코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을 우리는 맡고 이 해내고 있고 또 해내 가야할 것이다. 더욱이 그동안 화학비료에 지원되던 보조금이 2005년까지는 전면 중단되고 대신 퇴비비료는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렇게 확대 지원되는 우리의 시장은 아무리 어려움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켜나가고 또한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자면 우리업계가 이 대로는 안된다. 좀더 스스로 정비하여 더

욱 노력하고 단합된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제는 계분이나 말려서 분쇄, 유통시키던 그런 시장이 아닌 것이다. 명실상부 환경과 농업을 굳건히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우리나라 환경농업을 이끌어갈 주역이 될 것을 다짐해본다.

사업소세 면세안내

우리 회원사들 대다수가 납부하고 있는 사업소세는 기업의 집중에 따른 재정수요 및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종업원할과 재산할의 두 가지가 있다.

종업원할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에 0.5%를 납부하게 되어있으나 종업원이 50인 이하인 과세 면제대상이므로 우리에게는 거의 해당되지 않는다.

재산할은 사업소 연면적(330㎡이하는 과세면제)과세 1㎡당 250원(단, 오염물질 배출업소는 2재중과)으로 우리업체 대다수가 조세대상이 된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202조제1항에서 오물처리시설, 공해방지시설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잠깐 지방세법 제2002조 제1항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사업소용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제2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건축물을 포함한다)다만, 종업원의 보전, 후생, 교양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합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병기고, 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

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기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되어있다. 여기서 “오물 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 및 오수, 분뇨 그리고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서의 오수, 분뇨, 축산폐수 등을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하는 행자부 유권해석이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와 같이 폐기물을 주원료로 하여 재활용하는 시설은 지방세법상 비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필요 없는 세금은 납부 하지 않게 되길 바란다.

사업소세 관련 중요법규 및 해석 안내

【사업소의 정의】

"사업소"라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법제243조제1호

【종업원의 급여총액】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소득세법제20조 제1항(근로소득)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

-법제243조제5호

【종업원의 범위】

사업소 또는 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원, 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급여의 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

(상근종사자는 물론 무급접대부, 일용근로자, 법인의 비상근이사등을 포함한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 다만 국외근무자 제외됨)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건물(동법시행령 제75조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및 건물이 없고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

【면세점】

종업원할 :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의 수가 월통상 50인이하인 경우

재 산 할 : 당해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법 제249조

【비과세 대상】

급여(종업원할) : 소득세법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 급여(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및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등)

- 동법시행령 제203조

건물(재산할) : 종업원의 보건, 위생, 교양등에 직접 공하고 있는 기숙사,사택,구내 식당,의료실,도서실,대피시설,체육관,휴게실, 병기고, 실제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공해방지시설등

- 동법시행령 제202조

**회비 및 생산물 배상책임
보험금 안내**

해마다 이루어지는 중앙정부 보조사업에는 농협중앙회와 계약시 반드시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한다. 이에 협회는 단체보험에 가입 각 회원사의 규모에 따라 보험료를 분배 조정 하고 있다. 그 기준은 가입기간은 1년 단위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 있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가입하는 것으로 예상판매액을 산출 그 규모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하고있다. 판매예상금액은 농협에 보조비료 주문량을 참고로 하고 있고 이렇게 하여 납입된 보험료는 연말 농협중앙회로부터 총 납품 검수량 집계표를 받아 주문량과 검수량을 비교 그 수량에 따라 10만원단위를 기준으로 다음해 보험료 계산에 가감 적용하고 있다. 협회 운영방식을 연초 보험료와 함께 회비 및 기타 찬조금을 년 회비로 함께 받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살림에 모든 회사가 자금에 대한 애로사항은 다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보험가입은 꼭 필요한 것이고 협회를 운영하려면 일정경비 또한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나마 보험은 단체보험으로 함으로 한 업체당 평균보험료가 50만원이 채 되지 않는

다. 매출액 5억원을 기준으로(5억원 미만은 모두 같이 적용함)약 250만원 가량 책정되는 보험료에 비해 협회를 통해 가입함으로써 비용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 회비와 찬조금에 대해서는 협회는 나름대로 최소의 인원으로 불필요한 경비를 줄이고 회원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직원 모두 노력하고 있으나 월 회비 3만원으로는 도저히 운영이 불가능한 입장이다. 그래서 그간은 회장과 지회장을 통해 협조를 얻어 어렵게 운영되어 왔으나 그것도 한계가 있어 전회원사에게 중앙보조사업에 한해서 판매 분의 일정량의 지분을 찬조 받고 있다. 우리보다 한 발 먼저 시작한 유기비료공업협동조합은 이미 6년 전부터 시행한 제도이기도하다. 그렇게 해서 어렵게 유지하고 있으나 그래도 해마다 김상원회장에 의존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올해는 단체표준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 찬조금이 보태져서 더욱 부담이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이것 또한 처음 우리 협회의 법인설립인가 당시 농림부와 농협중앙회에 약속한 사항이기에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보다는 자체 품질관리 및 업계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어느 단체든 외부로부터의 지원을 받지 않는 단체는 초창기에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다. 아무쪼록 협회 임직원은 회원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저 회원사의 협조를 바랄 뿐이다.

**비료관리법상 행정처분에 대한
질의 회신내용**

질의내용: 정부지원 퇴비공급업체를 대

상으로 품질검사 실시요령에 따라 시행하는 퇴비의 품질검사를 위하여 시. 군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농촌진흥청에 검사를 의뢰하여 성분 검사결과 공정규격을 위반하였을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이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유통 또는 공급할 때』로 되어 있는바 이 조항으로는 퇴비의 시료를 제조장(공장)에서 채취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유통되는 농협이나 일반시중에서 유통되는 제품 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음.

답변내용: 이에 대하여 관계관청인 농림부의 답변은 제조장(공장)에서 시료를 발취하여 검사한 결과가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기준을 위반한 경우 비록 생산물이 판매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조중인 비료가 아니라 제조가 완료된 비료라면 정상제품으로 보아 관련법의 규정대로 영업정지 및 당해제품을 회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고 유권해석을 하여 회신하였다.

특허상품에 대한 관련업체 안내

음식물 찌꺼기를 이용한 비료와 그 제조방법에 관해 특허 출원한 업체가 활용방법에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 인터넷 신문고에 접수되어 관련부서인 농림부농산경영과의 추천으로 안내함. 특허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요약: 본 발명품은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비료와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제조방법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여 이물질 수거한 다음 분쇄하고 탱크에 넣은 후 22~26시간 교반하면서 밀폐된 탱크내 온도를 90~110℃되게 가열하여 건조 및 살균된 음식물 쓰레기 분말을 제조한 다음 이음식물 쓰레기 분말에 생석회 가루와 규산질 비료 및

참숯가루를 10:1:1:1의 중량비로 혼합한 것에 갈대순, 소나무숯가루, 흑설탕, 온수를 4:1:1.5:4의 중량비로 혼합하고 슈도모나스속 균을 혼합물 총중량의 0.1~0.3중량% 접종하여 20~30℃항온기에서 5~10일간 발효 시킨 다음 여과하여 제조된 아이제이에스를 총중량 대비 1~2%첨가하여 배합하고 이 배합물에 대하여 총중량대비 5~15%의 물을 가하고 교반하면서 24~48시간동안 20~30℃에서 발효 시킨 다음 익수크루더를 통과시켜 지름 2~2.5mm의 입자로 만든 다음 건조하는 과정을 만든다. 이상과 같은 기술이 필요한 업체는 전화 061-756-5867 임 명호나 협회사무실 또는 협회홈페이지 자료실을 참고하거나 연락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가축전염병과 퇴비의 문제

조류독감등 가축의 전염병으로 전국이 불안에 떨고있다. 가뜩이나 침체된 경기 속에 축산농가가 겪는 고초는 이루 말 할수 없을 것이다. 특히 전염병의 전달매체로 제일로 위험한 가축의 분변을 주 원료로 하고있는 우리들은 더 관심이 많을수밖에없다. 전달매체가 꼭 분변많은 아니겠지만 제일로 위험한것만은 사실이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기위해서라도 퇴비에 대한 생산과 유통에 사전 준비가 있어야 하겠다. 한군데 대형공장에서 대량생산되어 먼 지역까지 많은 물류비를 써가며 유통되는 방식은 반드시 지향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발효되지않은 불량퇴비의 유통은 비료로서의 문제뿐만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올수있는것이다. 그리고 전염병 발생지역에서는 가축을 살처분하는 광경을 뉴스시간을 통해 자주 볼 수있다. 이번에 문제가된 조류독감은 60℃이상에서 4~5시간이면 사멸한다고 하는데 꼭 살처분의 방식이 매립밖에는 없는지 궁금하다. 우리가 퇴비를 만들때 자연 발효열을 이용하여 80℃이상 고온을 몇일간씩 유지시키는데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는 실험을 해 보는 것은 어떤지 한번 관계당국에 건의해 보고싶다.